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4호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 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전 2014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드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바.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스포츠 약소국”이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화폐로 1만 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를 말한다.
3. “스포츠 진흥사업”이란 스포츠 문화의 기반조성 및 선진체육기술을 전파·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비전 2014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비전 20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약소국 소속 선수단에 대한 초청 전지훈련
2.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3.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장비의 지원
4.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진흥사업
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스포츠 교류
6. 그 밖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호.(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운영은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초청 전지훈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함.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국제스포츠교류담당 최 경 주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신 중 환